

항공기사용사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40조)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정지기간을 합산한다.

나. 처분권자는 제2호에 따른 처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복리의 침해 정도,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 항공종사자 과실의 정도 및 위반행위의 내용·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 1) 사업의 전부정지 또는 사업의 일부정지의 경우: 처분 기준일수를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것. 이 경우 늘릴 때에도 그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2) 항공기가 1대인 사업자의 등록 취소를 경감하는 경우: 90일 이상의 사업 전부정지를 할 것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사업종류별 처분내용							
		항공기 사용 사업	항공기 정비업 및 항공기 취급업	항공기 대여업 및 초경량비행장 치사용사업	항공레저 스포츠사업	상업 서류송달 업	항공운송 총대리점 업	도심 공항터미널 업	여행 업자
1. 등록·허가 및 신고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0조·제42조·제44	법 제40조제1항제1호, 제43조제7항, 제45조제7항, 제47	등록 취소	등록 취소	등록 취소	등록 취소	영업 소 폐쇄	영업 소 폐쇄	영업 소 폐쇄	

조 · 제 46 조 · 제 48 조 · 제 50 조 및 제 52 조에 따른 등록 · 신고를 한 경우	조제 8 항, 제 49 조제 8 항, 제 51 조제 7 항 및 제 53 조제 8 항								
나. 법 제 30 조 · 제 42 조 · 제 44 조 · 제 46 조 · 제 48 조 · 제 50 조 및 제 52 조에 따라 등록 · 신고를 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 40 조제 1 항제 2 호, 제 43 조제 7 항, 제 45 조제 7 항, 제 47 조제 8 항, 제 49 조제 8 항, 제 51 조제 7 항 및 제 53 조제 8 항	등록 취소	등록 취소	등록 취소	등록 취소	영업 소 폐쇄	영업 소 폐쇄	영업 소 폐쇄	
다. 법 제 30 조 · 제 42 조 · 제 44 조 · 제 46 조 · 제 48 조 · 제 50 조 및 제 52 조에 따라 등록 · 신고를 한 사업 범위를 위반하여 사업을 한 경우	법 제 40 조제 1 항제 2 호, 제 43 조제 7 항, 제 45 조제 7 항, 제 47 조제 8 항, 제 49 조제 8 항, 제 51 조제 7 항 및 제 53 조제 8 항	사업 일부 정지 (30 일)	사업 전부 정지 (30 일)	사업 전부 정지 (30 일)	사업 전부 정지 (30 일)	사업 전부 정지 (30 일)	사업 전부 정지 (30 일)	사업 전부 정지 (30 일)	
라. 법 제 30 조 · 제 42 조 · 제 44 조 · 제 46 조 · 제 50 조 · 제 48 조 및 제 52 조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기준에 미달한 경우	법 제 40 조제 1 항제 3 호, 제 43 조제 7 항, 제 45 조제 7 항, 제 47 조제 8 항, 제 49 조제 8 항, 제 51 조제 7 항 및 제 53 조제 8 항	등록 취소	등록 취소	등록 취소	등록 취소	영업 소 폐쇄	영업 소 폐쇄	영업 소 폐쇄	
2. 법 제 9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 제 40 조제 1 항제 4 호, 제 43 조제 7 항, 제 45 조제 7 항, 제 47 조제 8 항, 제 49	등록 취소	등록 취소	등록 취소	등록 취소				

양수하거나 합병한 경우	7항, 제47조제8항, 제49조제8항, 제51조제7항 및 제53조제8항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6. 법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상속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0조제1항제9호, 제43조제7항, 제45조제7항, 제47조제8항, 제49조제8항, 제51조제7항 및 제53조제8항	사업 일부 정지 (20 일)	사업 전부 정지 (20 일)	사업 전부 정지 (20 일)	사업 전부 정지 (20 일)	사업 전부 정지 (20 일)	사업 전부 정지 (20 일)	사업 전부 정지 (20 일)	사업 전부 정지 (20 일)	
7. 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 없이 휴업한 경우 및 휴업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법 제40조제1항제10호, 제43조제7항, 제45조제7항, 제47조제8항, 제49조제8항, 제51조제7항 및 제53조제8항	사업 일부 정지 (20 일)	사업 전부 정지 (20 일)	사업 전부 정지 (20 일)	사업 전부 정지 (20 일)	사업 전부 정지 (20 일)	사업 전부 정지 (20 일)	사업 전부 정지 (20 일)	사업 전부 정지 (20 일)	
8. 법 제39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사업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40조제1항제11호, 제43조제7항, 제45조제7항, 제47조제8항, 제49조제8항, 제51조제7항 및 제53조제8항	사업 일부 정지 (30 일)	사업 전부 정지 (30 일)	사업 전부 정지 (30 일)	사업 전부 정지 (30 일)	사업 전부 정지 (30 일)	사업 전부 정지 (30 일)	사업 전부 정지 (30 일)	사업 전부 정지 (30 일)	
9. 법 제62조제5항을 위반하여 요금표를 갖춰 두지 않거나 항공교통이용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	법 제40조제1항제12호, 제43조제7항, 제45조제7항, 제47조제8항, 제	사업 일부 정지 (5일)	사업 전부 정지 (5일)	사업 전부 정지 (5일)	사업 전부 정지 (5일)					

지 않은 경우	49조제8항 및 제51조제7항								
10. 「항공안전법」 제 95조제2항에 따른 항공기 운항의 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운 항정지기간에 운항 한 경우	법 제40조제1 항제13호	등록 취소							
11. 법 제40조에 따른 사업정지 명령을 위 반하여 사업정지기 간에 사업을 경영한 경우	법 제40조제1 항제15호, 제 43조제7항, 제 45조제7항, 제 47조제8항, 제 49조제8항, 제 51조제7항 및 제53조제8항	등록 취소	등록 취소	등록 취소	등록 취소	영업 소 폐쇄	영업 소 폐쇄	영업 소 폐쇄	